

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(안)

의안 번호	9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8. 04. 07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- 지방자치법 제39조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,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 변경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주차환경개선지구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중인 당리동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일부 부지의 매각기피에 따라
-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접 대체부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차난 및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

3. 취득대상 재산현황

구분	소재지	지목	면적(m ²)		사업비 (시설비포함)	비고
			부지	건물		
당초	계		252	209.61	589백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지매입: 149m² 증가 • 건물매입: 71.11m² 감소 ※ 주차장 20면 건설
	당리동 78-1	대지	173	72.22		
	당리동 79-1	대지	79	137.39		
변경	계		401	138.5	589백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물매입: 71.11m² 감소 ※ 주차장 20면 건설
	당리동 78-1	대지	173	72.22		
	당리동 83-18	대지	228	66.28		

4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39조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
-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

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7-2)

회계명 : 주차장 특별회계

(단위 : m² ,천원)

재산의 표시				추정 금액 (평가액)	취득 시기	취득 사유	현소유 자	취득재산소유자 주소·성명	비고		
구 분	소 재 지	지 목 (구 조)	면 적 (m ²)								
합 계				589,000							
토지	당리동 78-1번지	대지	173	443,350	2008년 상반기	주차장 건설	이석순	당리동 317-16 사하구청장			
	"	계	72.22								
건물	"	A동 (블럭조)	40.72						이석순	당리동 317-16 사하구청장	
	"	B동 (경량철골조)	31.5								
토지	당리동 83-18번지	대지	228						장광후 외3	당리동 317-16 사하구청장	
건물	"	세 멘 벽돌조	66.28			장광후 외3	당리동 317-16 사하구청장				
공사				145,650	2008년 하반기						

위치도



지적도 및 현장사진

